


재난안전실-7694('21.12.17.)

- 2022년도 -

안전보건관리(산업재해예방) 계획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재 난 안 전 실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안전 경영 방침

(SMS & KOSHA 1800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잠재되어있는 불안정한 요소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최고로, 신뢰받는 행복 도시철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1 공사는 안전이 공사 경영의 최우선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모든 정책사항 추진 시 사람중심 안전구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2 공사는 사전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관리활동에 있어서,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안전사고 및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3 공사는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배분하여 안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 4 공사는 안전성과 주기적 확인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5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령과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019. 03. 1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2022년 안전보건관리(산업재해예방) 계획

미션	시민의 안전을 최고로, 신뢰받는 행복 도시철도		
비전	The(더) 안전하고 The(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전략	안전관리 경영체계 강화	근로자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	무재해 사업장 실현

목표	중대재해 “ZERO”	산업재해 “ZERO”
추진분야	추진 과제	
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유지 유해·위험기구 관리 및 안전보건표지 관리 	
교육·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위탁교육 실시 재해예방 응급조치 훈련 실시 	
안전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무재해운동 추진 안전파수꾼 활동 운영 안전문화 확산 행사 추진 자체 설비를 통한 각종 홍보활동 추진 대외 홍보 및 캠페인활동 실시 	
산업보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환경 및 사무실 공기질 측정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건강진단 및 유소견자 관리 	

I 추진과제 주요 내용

1. 예방활동 강화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점검분야 : 현업부서 10팀

구분	일상			주간	월간	분기	4월	반기	연 간			
	1일	3일	5일						1년	2년	3년	6년
영업	●				●							
역무자동화	●				●	●		●	●			
차량	●			●			●		●		●	●
신호	●			●	●	●		●	●			
통신		●			●	●			●			
전기	●	●	●		●	●		●	●		●	
기계환경	●				●	●			●			
토목	●							●	●	●		
건축	●				●				●			
관제	●				●			●	●			

○ 추진일정 : 2022. 1. 1. ~ 12. 31.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 1·2·3종 시설물의 정기·정밀점검(상·하반기 년 2회)
- 급경사지 안전점검(년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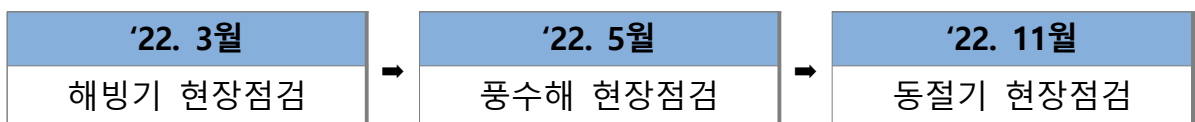
○ 계절별 재해예방 사전점검 시행

- 해빙기(2월), 풍수해(5월), 동절기(11월) 예방점검 실시
- 자체 종합안전

○ 임원진 현장 합동점검 실시

- 참여인원 : CEO 및 경영본부장, 기술본부장 참여
- 점검대상 : 주요 시설 및 관리상태 점검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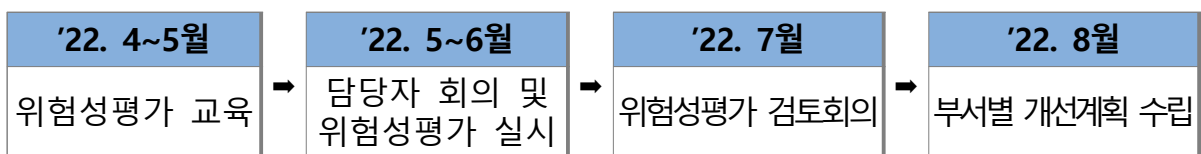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실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추진목적
 - 사업장내 잠재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관리하여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실행함으로써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추진내용
 - 위험성평가 유형 : 작업공정, 화학물질, 비상대응분야 실시
 - 외부 전문가 초청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평가대상 : 전 부서
- 평가방법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 단계별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평가 준비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 선정 ◦ 위험성평가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유해·위험요인 파악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목록표 작성
위험성 추정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 정도 추정 ◦ 유해·위험요인 심사 ⇒ 위험도 정량화
위험성 결정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여부 판단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실행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 감소대책 수립 * 감소대책 실행 후에도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위험성 정보 고지

○ 추진일정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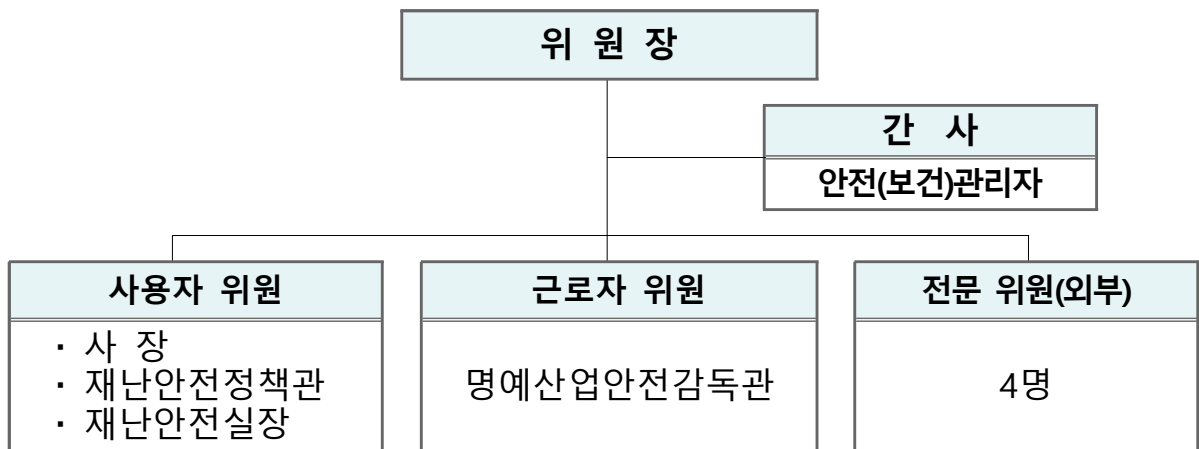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추진개념 및 목적

- 공공분야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이 정착되도록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안전관련 자문 등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노·사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안전경영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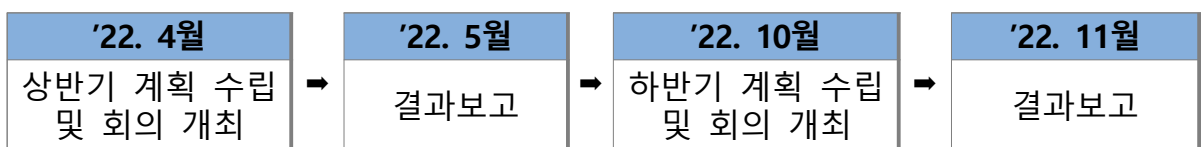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구성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책추진에 대한 컨설팅
- 공사 안전보건활동 및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 근로자 안전수칙준수 지도 등 자율적 안전보건점검활동 참여
-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 안전보건관련 제도 개선사항 건의
- 기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참여 등

○ 추진일정



□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근로협의체】

- 추진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 추진개념
 - 공공기관 사업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이하 “하청업체” 라 함)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이 원청업체(공공기관)에 전달되지 아니하여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시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
- 추진목적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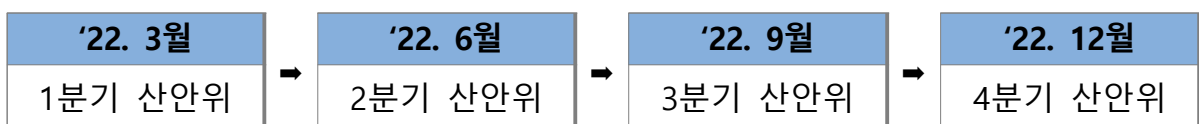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노·사 동수 각 9인 이내
 - 회의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필요시) 개최
 -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 및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안전보건매뉴얼 개정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재해 조사 등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 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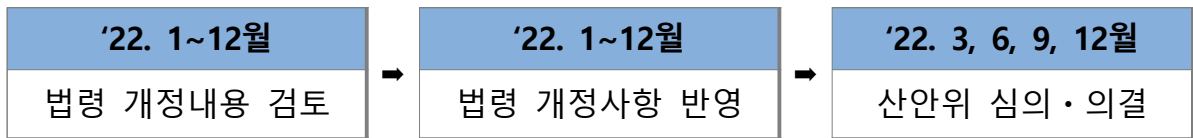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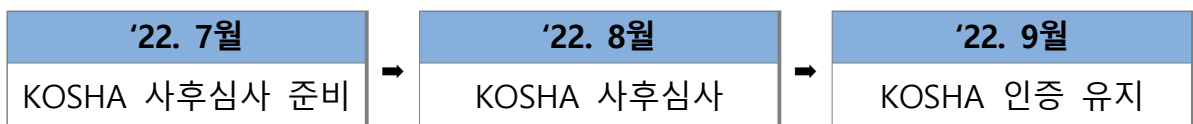
□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안전보건매뉴얼 운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운영방법 : 관계법령 개정사항 모니터링하여 수시 보완·개정
- 추진부서 : 재난안전실(협조 : 전 부서)
- 변경절차 : 사규심의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주요내용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유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초 인증(유효기간 3년) : 2007년 10월
 - 2022년 8월 중 사후심사 실시(예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준비
 - 안전보건매뉴얼 개정사항 검토 : '22. 1 ~ 5월
 - 안전보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22. 5 ~ 6월
 - 2021년 전환심사 시 개선 권고사항 반영
 - 필요시 담당자 위탁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시
- 추진일정



□ 유해·위험기구 관리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 추진목적
 - 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유해·위험기구에 대한 방호장치의 기능 및 훼손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관리대상 : 총 124종 941대
 - 차량(87종 107대), 신호(1종 2대), 통신(1종 2대), 전기(6종 14대), 기계환경(10종 788대), 토목(7종 15대), 건축(7종 7대), 역무자동화(5종 6대)
- 위험기계·기구 상태 점검
 - 방호장치 관리 및 점검
 - 관리감독자가 소속 직원 중 관리책임자 지정하여 관리
 -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 점검사항: 방호장치 기능 및 훼손 여부 점검

□ 안전·보건 표지 관리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리감독자 책무
 - 유해·위험 작업장내 안전·보건표지의 올바른 부착 및 위치 적정성 여부 판단
 - 안전·보건표지의 파손 및 훼손 여부 점검
 - 유해·위험요인의 변경 여부(이동, 소멸) 등
-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 추진부서: 차량·신호·통신·전기·기계환경·토목·건축·역무자동화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경고	202 산화성물질경고	203 폭발성물질경고
205 부식성물질경고	206 방사성물질경고	207 고압전기경고	208 매달린물체경고	209 낙하물경고	210 고온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상실경고	213 레이저광선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흡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착용	302 방독마스크착용
303 방진마스크착용	304 보안면착용	305 안전모착용	306 귀마개착용	307 안전화착용	308 안전장갑착용	309 안전복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조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행실 등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행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하기물질명칭 제외사용/반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 추가 시 예시문		 취발유화기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2. 안전보건 교육·훈련 시행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 분야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안전보건교육	전 직원	사무직 종사자 : 3시간/분기 사무직 외 종사자 : 6시간/분기
철도안전교육	철도종사자	운전/관제업무 종사자 : 2시간/월 그 외 안전업무종사자 : 1시간/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구 분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신규·보수 : 6시간/년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PL, 분소장, 역장 등	16시간/년
안전·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 교육 : 34시간 보수 교육 : 24시간
안전담당자	각 부서 안전업무담당자	응급처치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철도안전관리체계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 실시

- 추진부서 : 재난안전실
 - 강사 : 철도안전 및 재난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자
- 추진시기 : 2022. 2월 ~ 12월
- 교육장소 : 역사 등 교대근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근무지 우선 선정
- 교육대상 : 공무원 직원
- 교육내용 : 재난관리, 철도안전,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

전문성 강화 위탁교육 실시

추진부서	교육과정
재난안전실	철도안전전문가 과정 등 16개 과정
역무자동화팀	반도체 부품 고장진단 및 수리 등 2개 과정
차량팀	철도차량 기술교육 등 17개 과정
승무팀	Human Error예방(인간공학) 등 3개 과정
신호팀	철도장비 운전면허취득 등 7개 과정
통신팀	정보통신망 구축설계 및 감리 등 8개 과정
전기팀	전기안전관리자교육 등 11개 과정
기계환경팀	소방설비 현장 실무교육 등 7개 과정
토목팀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등 6개 과정
건축팀	품질관리 전문교육 등 4개 과정
종합관제처	철도교통관제사 교육 등 4개 과정

재해예방 응급조치 훈련 실시

- 추진내용 : 팀별 비상대응훈련 시 응급조치 훈련과 병행 실시
- 추진일정 : 2022. 1월 ~ 12월

팀명	비상대응 훈련	응급조치 훈련명
재난안전실	심폐소생술 훈련 실시	질식사고 대비 훈련
역무자동화팀	풍수해 침수대비 전자설비 복구 훈련	골절사고 대비 훈련
차량팀	차량 견인 훈련	협착사고 대비 훈련
신호팀	열차탈선 대비 임피던스 본드 복구 훈련	골절사고 대비 훈련
통신팀	열차충돌 및 통신실화재 복구 훈련	골절사고 대비 훈련
전기팀	전차선 단전대비 역사 정전사고 조치 훈련	감전사고 대비 훈련
기계환경팀	정전에 따른 승강기 가힘 시 조치 훈련	골절사고 대비 훈련
토목팀	특수차 탈선 시 복구 훈련	골절사고 대비 훈련
건축팀	역사침수 시 복구 훈련	골절사고 대비 훈련
영업팀	역사 화재 시 복구 훈련	심폐소생술 훈련
종합관제처	승객 선로 추락 시 조치 훈련	심폐소생술 훈련

3. 안전문화 확산

부서별 무재해운동 추진

[기준일자 : 2021. 11. 15.]

구 분	인 원(명)	목표일	목표 배수	개시 일자	목표달성 예정일
공 사	915*	1,755,000시간	1배	2020.09.24.	2022.01.12.
경영지원처 (총무팀)	32 (일반직 8, 공무원 24)	624일	2배	2021.04.05.	2022.12.19.
고객사업처 (영업,역무자동화)	278 (일반직 47, 공무원 231)	416일	3배	2021.04.26.	2022.06.15.
차량운영처	295 (일반직 236, 공무원 59)	416일	2배	2021.11.14.	2022.08.03.
기술운영처	142 (일반직 139, 공무원 3)	520일	3배	2021.04.06.	2022.09.07.
종합관제처	40	624일	13배	2020.10.03.	2022.06.18.
인재개발원	15 (일반직 6, 공무원 9)	624일	2배	2021.04.06.	2022.12.20.

*공사 인원(산재보험 근로자 수)

안전파수꾼 활동 운영

○ 추진목적

- 사업장내 잠재되어있는 아차사고 및 잠재요인을 직원 및 현장 근로자가 스스로 발굴·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여를 통한 무재해 사업장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 추진방향

- 직원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관리부서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율적 안전관리의 정착
- 위험성평가 및 자체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동기부여

○ 추진계획

- 단계별 세부사항

1단계	현장의 불안전 요인 발굴
2단계	현업 직원의 안전파수꾼 활동
3단계	소관팀의 안전 조치
4단계	전파 대상 직원 안전교육

- 마일리지 부여

- 안전파수꾼 활동에 따른 개선조치 완료사항에 대해 차등 부여

등급	심의 지표	마일리지	비 고
S3	안전사고 예방 기여도 큼 - 중대 위험 요인의 개선, 가시적 효과	1	Safety 3
S2	안전사고 예방 기여도 보통	0.7	Safety 2
S1	안전사고 예방 기여도 적음(약간의 효과)	0.5	Safety 1
S0	등록 지양 사항 등	0	Safety 0

※ 취득 마일리지 상한 : 5점/(年·人)

- 인센티브 부여

- 안전파수꾼 활동 우수직원 포상실시(2명 이내)
- 안전파수꾼 활동 마일리지를 자체 경영평가에 반영
- 자체 종합안전심사 가점 반영

○ 안전파수꾼 심의회 개최

- 개최시기 : 매 분기 다음 달 초
- 심의위원 : 재난안전실장 외 3명
- 심의기준

- 조치완료 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 및 등급 결정
- 안전파수꾼 활동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는 사항은 제외

○ 추진기간 : 2021. 12월 ~ 2022. 11월

안전문화 확산 행사 추진

홍보내용	주관부서	시행일자	추진내용
안전점검의 날	현업부서	매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소관부서 시설·장비 점검 및 재해 취약요인 사전 제거
방재의 날	재난안전실	'22.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5일은 방재의 날임을 홍보 •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풍수해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재난안전실	'22.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합동 특별점검 시행 • 각 부서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공사) •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행사 참석
졸음운전 예방의 달	승무팀	'22. 5~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졸음운전 예방 행사(5월) • 하반기 졸음운전 예방 행사(8월) • 특별 졸음운전 예방의 날 운영(10월)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무적합성검사 졸음예방 구호 제창 - 침승지도시 졸음운전 및 안전운행 독려 - 졸음운전 강조기간 배너운용

자체 설비를 이용한 각종 홍보활동 추진

홍보내용	주관팀	추진내용
전동차객실 LCD모니터	차량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내용 : 화재발생시 탈출요령, 심폐소생술, 안전홍보 동영상 등
승강장행선 안내게시기	종합 관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22. 1. 1. ~ 12. 31.(연중) • 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설명절·방재의 날,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여름휴가철안전위험요인, 추석명절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 대외 홍보 및 캠페인활동 실시

홍보내용	주관팀	추진내용
일일기관사 체험행사	승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상·하반기 각 1회 • 장소 : 용산차량기지 • 내용 : 송원대학교 철도관련학과 학생대상 기관사 체험
시민 일일 명예역장	영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횟수 : 10회 • 장소 : 19개 역사(소태역~평동역) • 내용 : 역장 업무 및 안전·질서유지업무 체험
안전체험장 운영	차량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22. 3 ~ 11월 • 장소 : 용산차량기지 • 내용 : 전동차 사고·화재발생시 탈출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승강기이용 안전캠페인	기계 환경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매월 • 장소 : 역사 • 내용 : 지상E/L 일반인 이용제한 및 승강기 안전이용방법 등
안전보건 소식지발행	재난 안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매분기 1회 • 장소 : 공사 홈페이지 • 내용 : 공사 및 유관기관 안전보건 소식, 우수사례 소개, 최신 산업안전보건 동향 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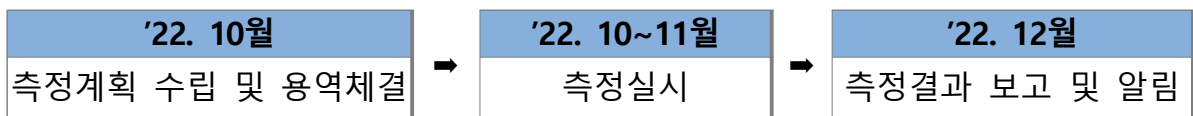
4. 산업보건관리

□ 작업환경 및 사무실 공기질 측정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추진목적
 - 사업장내 작업환경 유해인자 측정 및 분석으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 측정항목
 - 작업환경 : 소음, 분진, 미세분진, 유기화합물
 - 사무실공기질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 측정내용

항 목	측 정 장 소	측정방법	관 련 팀	횟 수
분 진	본선터널(야간)	개인시료채취	토목팀	2회
소 음	중정비	개인시료채취	차량팀	2회
유기화합물	중정비(도장)	개인시료채취	차량팀	4회
사무실공기질	소태취급실	지역시료채취	신호팀	1회
	마륵분소	지역시료채취	기계환경팀	1회

- 추진일정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관리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19조
- 관리목적 :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애 및 질식재해 예방
- 추진부서: 총무·인재개발·차량·통신·전기·기계환경팀
- 밀폐개소 : 86개소(맨홀, 물탱크 등)
- 이행점검 : 2022년 자체 내부심사 시 점검
- 추진일정 : 2022. 1월 ~ 12월

□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관리목적 :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사전 예방
- 추진부서: 차량·전기·기계환경·토목·건축·역무자동화팀·종합관제처
- 관리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경고표지 부착,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 사용인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 시행
- 관리상태 점검
 - 점검시기 : 2022년 7월
 - 점검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여부,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양 식	작 성 예 시
<p>명 칭</p>  <p><신호어> <유해위험문구></p> <p>(그림문자예시)</p> <p><예방조치 문구></p> <p>예방 대응 저장 폐기</p> <p><공급자 정보></p>	<p>암모니아</p>  <p>신호어 : 위험</p> <p>유해·위험문구 : 극인화성 가스, 고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p> <p>예방조치 문구</p> <p>예방 : 열, 스파크, 화염과 같은 발화원으로부터 격리하십시오. 금연,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p> <p>대응 :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p> <p>저장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p> <p>폐기 : 관련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p> <p>공급자 정보 : 00화학(주), 경기도 과천시 중안동 ☎ 000-0000</p>

□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정신보건관리 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 추진목적
 - 산재위험 노출,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상사고 및 직무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의 치료 및 관리
- 추진계획
 - 대상직원 : 사상사고 관련 직원 및 직무스트레스 경험 직원
 - 지정병원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
- 추진일정 : 2022. 1월 ~ 12월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추진목적
 - 불편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
- 추진계획
 - 참여대상 : 환경미화분야 근로자
 - 시행기간 : 2022. 4월 ~ 11월
 - 협조기관 : 광주근로자건강센터
 - 구성내용

회차	소요시간	참여일정	내 용
1회차	2시간	4~5월	-기초검사 -비만관리프로그램 -근골교육
2회차	1시간	6~9월	-뇌심혈관 상담 및 근골격계 테이핑요법 시행 (간호사, 운동 처방사)
3회차	1시간		-본인 자가 마사지 지도(자가 근막이완법) -뇌심혈관 상담(고혈압, 혈당, 허리둘레 점검)
4회차	2시간	10~11월	-1, 2, 3회차 의사 총괄 종합상담 -기초검사 -폼롤러 교육 -수료증 수여

□ 임직원 건강진단 및 유소견자 관리

【임직원 건강진단 실시】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추진목적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 추진계획
 - 일반건강진단 : 공통검사항목 + 성·연령별 검사항목
 - 암검진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
 - 특수건강진단 : 정기, 배치후 진단
 - 추가건강진단 : 희망자
- 추진일정 : 2022. 3월 ~ 11월

【유소견자 관리】

- 추진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
 - 안전보건매뉴얼 안전보건지침서(건강진단 실시 및 이상자 관리 지침)
- 추진목적
 - 유소견자의 건강상담을 통해 근로자 건강증진
- 추진계획
 - 일반질환 유소견자(D2), 요관찰자(C2) : 년1회 상담
 - 야간작업 유소견자(Dn), 요관찰자(Cn) : 사후관리 소견서상 관리
 - 상담내용 : 검진결과 상담 및 혈압·혈당·체지방 측정
- 추진일정 : 2022. 2월 ~ 12월

II 중대재해 예방체계 확립

1. 관련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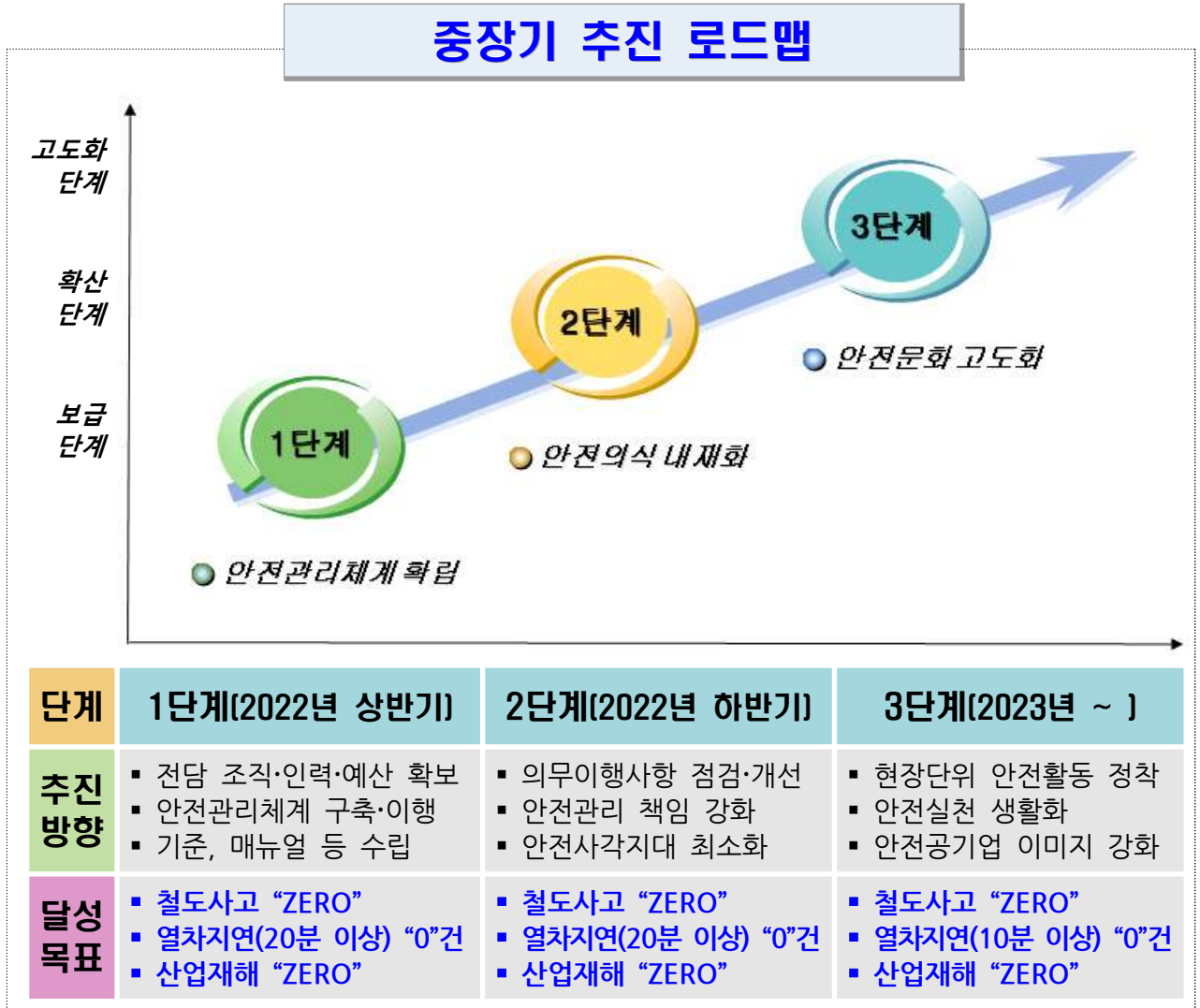
2. 대응방향

-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경영목표 ·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선제적 조치 이행
- 공사 연관성 검토내용 미흡사항 보완(개선) 추진
 - 검토내용 중 미흡사항 보완(개선)방법 모색을 통한 실행능력 확보 및 조치사항 이행 추진
- 법 시행에 따른 관련동향 모니터링
 - 법·제도적 보완사항 및 명확한 기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 관련동향 지속 파악 후 보완추진
- 중대재해가 공사에 미치는 여파

형사 처벌	손해배상
중대해재로 인한 형사 처벌 (기관장, 공사)	집단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기업이미지 손상	행정처분
재해기업 언론보도를 통한 공사이미지 손상 초래	정부 및 지자체 조사 및 행정처분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장기 안전경영 목표 수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관련 조치사항 추진

- 법적 요구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별도 계획수립)
 -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시행
 - 조직 검토, 제도 개선, 계획 수립 등 필요 조치사항 추진
- 관계법령 요구사항 모니터링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관리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사항 지속 보완